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831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2일

발의자 : 오지연 의원

1. 제안이유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하남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13.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중

마. 부서의견(문화정책과)

○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아닌 기존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 의견 미반영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하남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

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재양성교육 강화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및 학교·지역 연계 협력 지원
4.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5.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희공간 발굴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 (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 (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2024. 01. 11.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1	경기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7-18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2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2-08-09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09-28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4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06-04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5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6-19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6-06-20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12-2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06	문화체육과	
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11-01	문화예술체육과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3-03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2-08-1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12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12-30	경제문화농업국 문화관광과	
13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03-18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	
14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11-0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15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09-2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1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07-24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10-10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18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08-01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19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07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20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12-2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1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09-2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22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04-10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3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7-07	문화융성국 문화예술과	
2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8-16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3-27	문화예술과	
2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2-12-01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2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2-07-2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21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2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10-01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8-07-24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3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규정	2007-06-05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32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0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11-09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34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7-07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35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6-0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3-06-07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조례	2023-01-10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3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2-11-14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39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10-08	총무국 문화관광과	
40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05-18	행정안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